

■ 201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 콜로키움 자료집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

- ▶ 일시: 2012년 3월 20일(화) 10:30-12:30
- ▶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

사회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간	내용	비고
10:30~10:4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백혜정(사회자)
10:40~10:50	환영인사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0:50~11:50	발표	김혜영 박사(발표자)
11:50~12:00	휴식	
12:00~12:3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목 차

제1장 들어가는 말	2
제2장 연구동향	4
제3장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가구규모 추이	6
제4장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10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0
2.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됨과 돌봄 실태	11
2. 원가족과의 관계	16
3.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수준 및 학업중단 경험	17
4. 청소년한부모의 직업경험과 소득수준	19
제5장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22
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문제점	22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25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

생활실태와 현황을 중심으로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제 1 장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가족안팎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친밀성과 섹슈얼리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성담론은 성행동과 욕망에 대한 획일화된 규범을 강제하기 보다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주류로 부상해 왔다. 이러한 담론부상의 배경에는 작금의 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급속히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개방적인 서구 성문화와의 빠른 동조화, 그리고 개인통신휴대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교제와 만남이 규범적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사회의 현실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젊은 세대에게 있어 개방적인 성문화는 더 이상 생경한 것이 아니다. 전국 20개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혼전동거’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74%에 달하며(중앙일보, 2008년 7월 27일자), 중고등학생 가운데 여학생의 70%, 남학생의 65%이상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도 가능하다’라고 응답(굿데이, 2003년 9월 17일; 허남순 외, 2006:3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국가족실태조사에 응한 20-30대의 75%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도 성관계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어 더 이상 결혼은 성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장혜경·김혜영 외, 2005).

이러한 문화변동은 과거에 비해 혼전 성경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성경험의 평균연령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소비주의의 위력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은 개인미디어의 빠른 보급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와 가족이라는 규범적, 수직적 권위구조로부터 벗어나 제어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욕망 표출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창조된 가상공간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보의 교환과정을 통해 점차 그들의 욕망에 조응하는 자신들만의 생활세계를 구축하거나 다른 한편, 결코 공식적으로는 승인받을 수 없는 그들의 욕망을 더 이상 抑止하지 않으려는 일련의 시도를 감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일부

* 본고는 그동안 관련주제에 대해 발표 또는 게재, 발간되었던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발췌 재구성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인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십대청소년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공간과 전달매체를 통해 성적 친밀성의 자유로운 교환이나, 성이 주는 탐닉적인 쾌락에 몰입되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90년대 중반 음란 비디오 범람, 여중생 교내 출산 사건, 빨간 마후라'로 불린 청소년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등은 이러한 십대의 성적 일탈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박정애, 2009).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심각한 학력경쟁과 학업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녀진학을 위해 대부분의 가족은 그들의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십대들이 자각하는 성의식과 성문화는 기성세대들에게는 불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혼전성경험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혼전성경험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 나아가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성 및 가족규범의 일탈자라는 낙인이 가해지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십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성적 욕망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표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곧 이들의 성적욕망을 암묵적으로 배제하는 사회규범과의 충돌은 물론 기성세대들의 규범과 도덕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십대 청소년미혼모들의 경우, 미성년의 성경험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임신과 출산을 감행한 여성이라는 이중적 배제를 경험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십대 미혼모 가운데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교육수준의 증가 및 만혼화 등의 추세로 20대 이상의 결혼율은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10대 여성의 혼인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10대 기혼자 수는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결혼했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10대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통계청, 2010). 따라서 청소년 시기 이혼과 사별 등을 경험한 한부모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이들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봉쇄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됨으로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사회적 주변층으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온전한 부모역할 수행역시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의 가구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이들이 건강한 성인세대로 성장함과 아울러 이들이 안정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추진현황 및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연구동향

청소년 한부모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녀양육과 부양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정작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연구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부모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주로 논의의 초점이 이들 가족에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족의 내부적 다양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온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김혜영, 윤희식, 2005; 윤희식, 2004; 김미숙, 2006; 김미숙, 박민정외, 2000; 송다영, 2006; 성정연, 2000, 2006), 자녀양육비 확보 및 지원방안(박부진, 1999; 박복순, 2004; 김현정, 2001; 김수정, 2003; 강철희 외, 2000; 정순희, 문숙재 외, 1999; 정현숙, 1993)이나 비양육부모의 협력적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유희정, 2004; 장혜경, 민가영, 2002).

그러나 한부모가구 형성요인이나 이들 한부모의 연령에 따라 이들 가족이 직면한 문제의 수준과 층위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의 형성요인이나 경제수준, 한부모 가구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생활실태의 파악은 매우 기초적인 자료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경우, 일부 한부모 가족빈곤을 분석하면서 한부모 발생요인에 주목한 있으나 이 역시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윤희식, 2003).

특히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총괄한 연구는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한부모생활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일부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경험(김혜영, 2010)이나 청소년미혼모 발생경로와 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정경순, 2008; 윤미현, 이재연, 2000; 천혜정, 배선희, 송말희, 송현애, 전길양, 2002; 도미향, 정은미, 2001, 김만지, 2000), 이들 청소년들이 한부모가 된 경로나 유형 등을 모두 포괄하여 진행한 청소년 한부모 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경험이나 이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인 것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성경험과 임신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수위가

높은 우리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십대들이 성경험을 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는지, 혹은 출산 후 입양과 양육의 선택과정에서 어떠한 고민과 혼란함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이제까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다분히 성인으로의 입문을 위한 준비기 또는 아동과 성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불안정한 과도적 시기로 규정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는 청소년기를 강렬한 성적 충동을 발산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도, 결코 그들의 성적 충동이나 욕망의 표출은 허용하지 않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조응하듯, 10대의 성경험이나 자녀출산 및 양육에 관한 연구는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10대 청소년의 자녀출산 및 부모됨에 관한 논의는 오로지 미혼모에 관한 연구의 진행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요행히 최근 들어 10대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시기의 성경험과 임신 및 출산이 이들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완전한 성인기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의 성장이라는 인생의 과업과 더불어 자녀양육자로서의 돌봄과 양육 및 경제적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다. 대다수의 한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 이들 아동의 빈곤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본다면 청소년한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자립 및 지지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욕구 진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하고 있다.

제 3 장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가구규모 추이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청소년기에 있는 부 또는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형태만을 선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물리적인 연령은 법과 정책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는가 하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의 자격 여부가 단지 1-2세 차이의 물리적인 연령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역시 모두 동질적인 기질과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대한 정확한 연령적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마다 특정의 연령집단에게 기대하는 주요과업은 일종의 행위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과 진로탐색이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속성이 다분히 복잡하고 논쟁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지만, 적어도 청소년기의 규정은 이들의 학업 및 진로탐색 등이 내포된 교육 및 훈련제도 등과의 연관성에 의해 나름의 편차가 용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가장 넓게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기에 있는 부 또는 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정의하고자 한다.

21세기로의 진입과 더불어 과도한 노동경쟁과 높은 가구재생산 비용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개별가구의 부담이 적지 않고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만혼의 경향과 저출산은 이제 하나의 분명한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성인기로의 주요 과업의 하나인 노동시장의 진입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이 쉽지 않은 상황은 곧 전반적인 결혼적령기를 늦추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9년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31.6세 여성은 28.7세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패턴에 비추어 볼 경우, 청소년기의 연령에 해당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결혼건수는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증가 및 만혼화 추세는 이미 20대 연령의

결혼율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의 연령별 혼인건수를 나타낸 표를 통해, 10대 후반과 20대 연령의 결혼건수가 전반적인 감소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혼인건수와 함께 20대 이하의 결혼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30대 이상의 결혼건수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10대 기혼자의 수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19세 인구 가운데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남성 4257명, 여성 5329명으로 총 9586명에 달했던 것이다.

<표 1> 연도별 혼인부부 연령별 혼인 건수

(단위: 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19세 이하	6,880	5,718	5,095	5,022	5,805	7,722	6,068	6,483	5,297
20세~24세	73,536	64,851	58,407	53,364	48,273	48,865	44,386	37,333	30,673
25세~29세	157,536	150,767	147,710	145,447	146,469	158,008	167,601	155,981	144,037
30세~34세	41,422	44,277	48,330	53,049	57,305	62,377	68,192	69,272	70,496
35세~39세	17,584	16,999	17,762	20,356	22,077	22,743	24,989	25,450	24,997
40세~44세	11,501	11,621	12,729	14,867	15,606	13,613	13,855	13,582	13,567
45세 이상	9,945	10,602	12,440	16,493	18,769	17,306	18,468	19,614	20,566
미상	3	42	30	0	0	0	0	0	12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9

이른 나이의 혼인은 평균혼인연령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례적인 상황이나 이른 감정적 전이를 경험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즉 과거에 비해 결혼방식에서의 다양성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애정지상주의’ 문화트렌드는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층에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기의 결혼은 상당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만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 기혼자들의 다른 한편에는 이미 십대 청소년에 이혼자로 기록된 남녀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10대 남 성은 373명, 여성은 283명으로 총 656명이었으며, 사별한 10대는 남자 270명, 여자 179명 등 449명에 달해 십대 한부모수는 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대 초반연령대인 10-24세 인구의 경우에는 7만 3천여명의 기혼남녀와 약 2500여명의 이혼 남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0).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이들 자녀유무 및 혼인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혼 및 사별남녀의 수가 곧 청소년기의 한부모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2> 2010년도 청소년기 남녀의 연령별 혼인상태

(단위: 명)

나이	내국인(15세 이상)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총인구	40,203,788	12,311,702	23,213,954	3,068,545	1,609,587
15~19세	3,438,414	3,427,723	9,586	449	656
20~24세	3,055,420	2,979,443	73,421	411	2,145
남자	19,800,418	7,041,166	11,605,892	432,881	720,479
15~19세	1,826,179	1,821,279	4,257	270	373
20~24세	1,625,371	1,606,605	17,908	147	711
여자	20,403,370	5,270,536	11,608,062	2,635,664	889,108
15~19세	1,612,235	1,606,444	5,329	179	283
20~24세	1,430,049	1,372,838	55,513	264	1,43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다른 한편, 한부모 가족은 기혼남녀의 이혼과 사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의 경우, 혼전 임신 및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가운 만큼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미혼의 한부모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이 강한 탓에 이들의 존재는 비가시화 되는 경향이 강한 탓에 이들의 규모와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는 부재하다. 따라서 미혼 한부모가족의 추이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가능하지 않으며, 청소년 미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혼전 임신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태도는 청소년기 여성들의 임신을 낙태나 입양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연령별 분만건수로서 여성청소년들의 분만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청소년기 여성의 분만건수는 결코 적지 않아 연간 2만5천 건 내외에서 3만 건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연령별 분만건수만을 보여줄 뿐 분만여성의 혼인지위를 알 수 없고, 그 결과 이들의 출산이 결과적으로 미혼한부모 혹은 유배우상태의 유자녀가족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방법은 전혀 없다²⁾.

2)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대강의 추정은 김혜영, 김은지에 의해 시도된 바 있음(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1)

<표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수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세 미만	2,911 (0.63)	2,277 (0.48)	2,034 (0.44)	1,622 (0.38)	1,444 (0.33)	2,336 (0.49)
19 ~ 24세	38,266 (8.28)	33,932 (7.20)	30,315 (6.59)	24,193 (5.69)	21,299 (4.87)	26,152 (5.45)

※ ()안의 수치는 총 분만건수 대비 비율임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의 발표자료(2006년)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모 청소년은 5천명에서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전체 미혼모 가운데 청소년의 비중이 93년 32.4%에서 2000년 55.1%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세라고 보고하기도 한다. 미혼모의 실재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표성있는 표본추출을 통한 실태파악은 가능하지 않지만, 대체로 시설 중심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역시 청소년 미혼모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은 물론 안정적인 자녀양육기반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표 4> 전체 양육미혼모 대비 청소년 한부모 비율

항목	2010년 조사결과 양육미혼모 수(비율)	2009년 미혼모수(비율)
전체	727(100.0%)	569(100.0%)
25세 미만	287(39.5%)	62.4%
25세 이상	440(60.5%)	37.6

자료: 김혜영외(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외(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4 장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³⁾

1. 사회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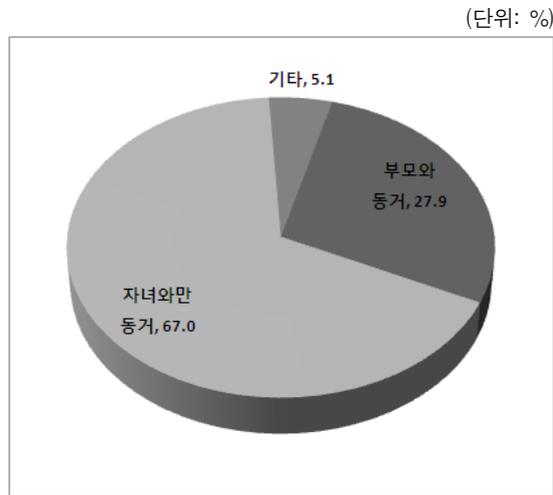
2011년 실시된 청소년한부모가족실태에 의하면, 미혼이 94.4%, 이혼이 3.1%로 대부분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의 표본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미혼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이하가 30.7%, 20세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20세 이상 응답자가 많았다. 20세 이상 응답자가 많았지만 이들의 평균연령은 20.5세로 대부분 20세 근처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었다. 본인의 연령대가 높지 않은 만큼 자녀도 대부분 매우 어린 상황이었다. 0-2세 영아가 87.2%였으며, 3-6세 유아가 11.5%, 7세 이상 취학아동인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즉 청소년한부모들은 출산한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와만 동거하는 비율이 67.0%로서 가장 높았으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도 27.9%로서 성인미혼모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아직 독립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청소년미혼모들은 1/3 정도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중인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나의 아이가 100%를 다소 넘어서 일부 청소년한부모는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외의 가족들 중에서는 어머니와 동거중인 경우가 47.2%였으나 아버지와 동거중인 경우는 33.0%로 훨씬 낮았다. 이는 청소년한부모들의 원가족 또한 한부모가족인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되며, 어머니와 함께 사는 청소년한부모들이 원가족으로 돌아갈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경우는 41.5%로 이들은 원가족으로 돌아가 함께 거주하는 것일 수 있으며 또는 별도로 형제자매와만 가구구성을 했을 수 있다.

그 외에 특이점으로는 비양육부모인 상대방과 동거중인 경우도 8.5%에 달하며, 상대방의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도 3.8%에 달한다는 점이였다. 관련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직까지 상대방과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아이가 크면서 상황에 소진된

3)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실태조사결과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상대방이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상황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1> 청소년한부모의 동거가족(N=391)

다음으로 주거지를 살펴보면,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48.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경우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26.3%로 더 많았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18.7%에 불과하였다.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가가 42.6%, 전세가 25.5%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상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93.0%가 월세로 주거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한부모들의 경우 시설이 아니면 거의 주거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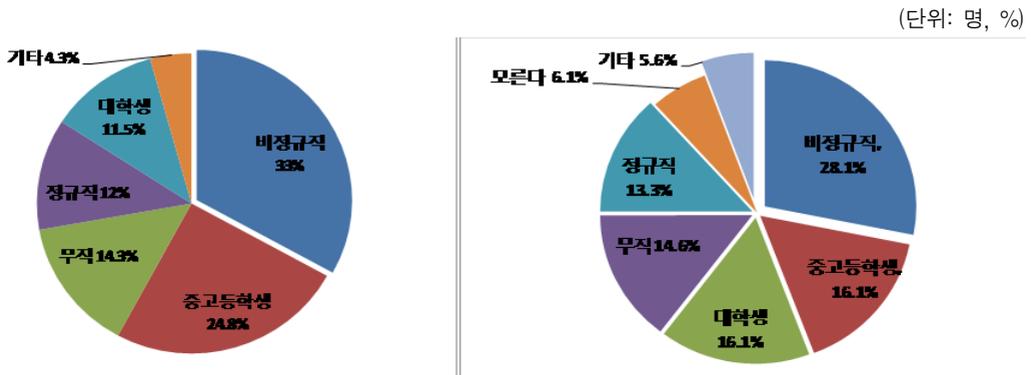
2.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됨과 돌봄 실태

1) 자녀임신 및 출산과정

조사대상자인 청소년 한부모들의 임신연령을 살펴보면, 평균 만19.4세, 미혼부들의 평균연령은 만 22.3세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을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들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평균연령은 이처럼 24세 이하에 몰려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임신 당시 평균연령이 만19.4세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들이 온전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우 임신 당시 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36.3%(중고등학생 24.8%, 대학생 1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33%, 무직 14.3%, 정규직 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자립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또한 이들 자녀의 아버지인 미혼부(일부 이혼남성한부모) 역시 미혼모들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 임신당시 상대 남성들은 ‘학생’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32.2%에 달하며, 무직인 경우도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불안정하나마 경제적으로 임신 및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남성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합할 경우 40%내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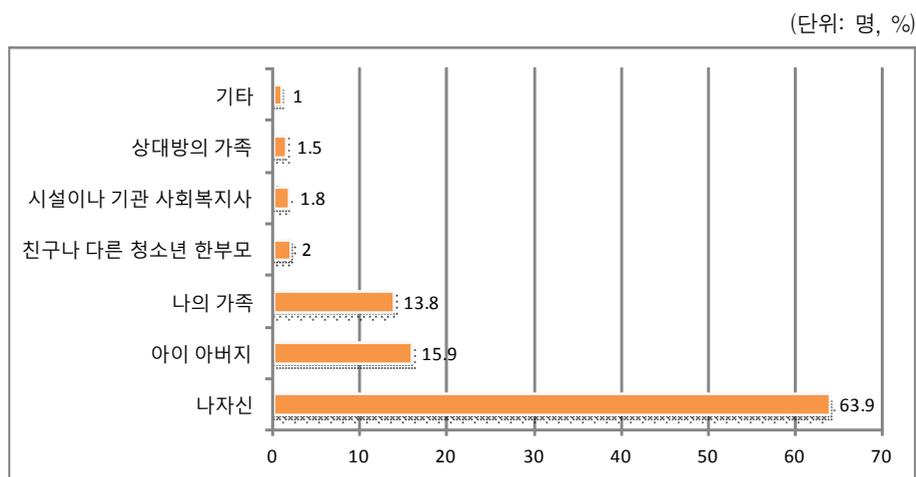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당시 사회경제적 위치(N=391)

임신당시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는 이들의 연령과 현재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시간적 효과에 의해 10대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고등학생 신분이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 비해, 20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학생, 중고등학생 신분에 있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이처럼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제도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의 임신은 바로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김혜영, 선보영 외, 2009). 따라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봉착할 경우, 당시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조언내용과 방식은 청소년의 향후 행위노선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불안정한 시기조차 특별한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약 64%가 자녀출산 후 양육결정 조차 오롯이 자신이 선택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아이 아버지’ 약 16%, 자신의 ‘웁가족’이 대략 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의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령이 20대 이상인 경우는 10대 한부모들에 비해 ‘자신’이 혼자서 결정했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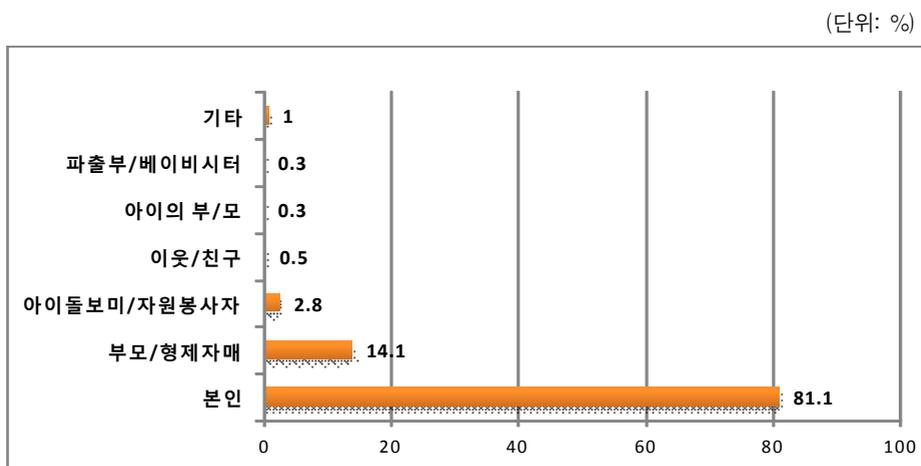


<그림 3> 자녀 양육 결정시 주요한 영향을 준 사람(N=391)

청소년 한부모의 평균자녀수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자녀들은 대체로 어린 영유아에 물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녀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이들 자녀의 87.2%가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0-2세이며, 11.5%가 3-6세, 7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겨우 5명(1.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시기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 보살핌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고, 특히 한부모로서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이나 자립기반 마련과 함께 자녀양육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부과된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이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보다는 배제의 경험을 적지 않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자녀돌봄의 유형과 방식은 향후 이들의 자립기반의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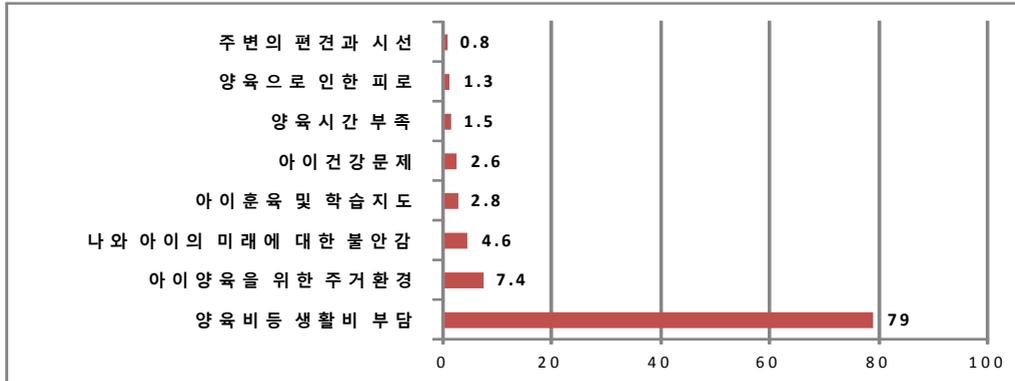
특히 자녀의 주된 돌봄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 한부모들의 약 81%는 ‘자신’ 이 주로 돌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들이 영유아라는 점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원가족 지원이나 이웃, 혹은 공공부문에서의 돌봄지원이 미약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자녀의 주돌봄에 대한 응답비율(N=391)

그렇다면, 이들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양육고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들이 1순위로 꼽고 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자녀양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의 부담’으로 나타나 이러한 응답은 것의 80%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주거환경 마련과 자신과 자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모두 한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곧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등의 최소한의 양육 노력조차 준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소간의 먼 미래로 볼 수 있는 고민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순위로 꼽은 어려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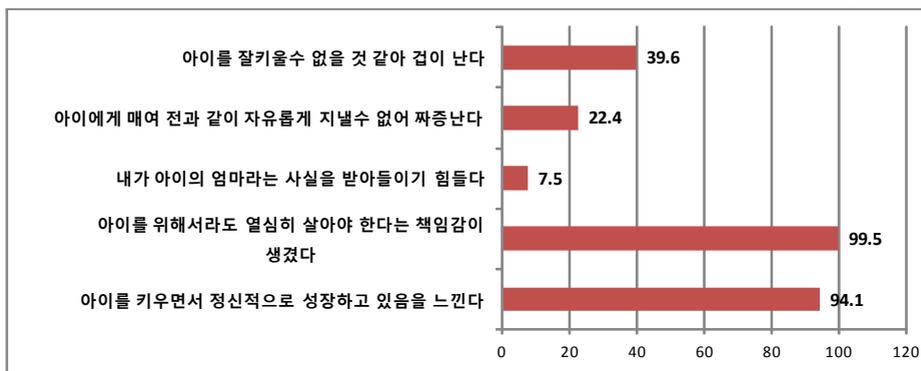
(단위: %)



<그림 5>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장 큰 고민(1순위) N=391)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부모로의 전이과정을 통해 터득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청소년 한부모들의 대다수는 자녀양육과정을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신의 성장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양육을 통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는 응답이 99.5%에 달하며,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진술에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응답율이 94%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에 관해서 비교적 낮은 정도의 동의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으로, 혹은 자신들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인한 아이양육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청소년 한부모의 비율 또한 적지 않음이 확인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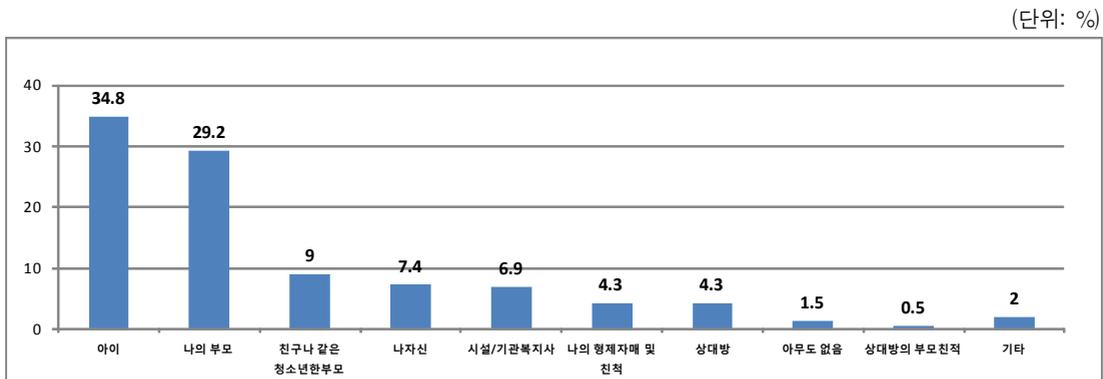


<그림 6> 자녀양육으로 인한 자신의 변화(N=388~390)

즉,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의 책임감과 자아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양육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원방안 역시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원가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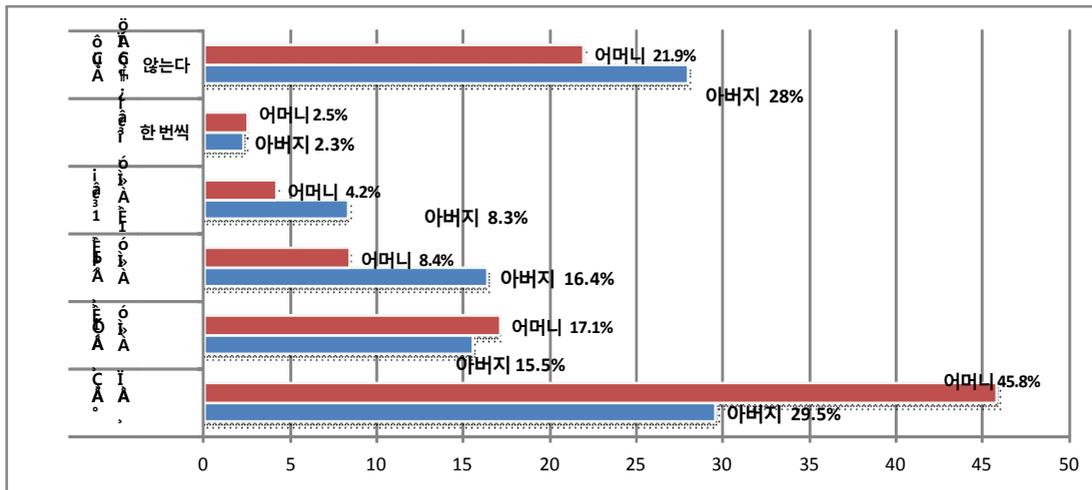
이처럼 청소년 한부모의 과반수 이상은 자녀양육조차 혼자서 결정하고, 거의 80%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의 아버지들로부터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자녀부양 및 양육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평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한부모들의 약 35%는 ‘자녀’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그들의 ‘부모’(29.2%), ‘친구나 같은 청소년 한부모’ 9%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지지망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유일한 의지처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은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서도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림 7>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 양육에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N=391)

다음으로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아이’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기대고 있는 그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신의 부모들과는 얼마나 자주 접촉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먼저 아버지가 생존해계시지 않은 경우가 13.2%, 어머니가 생존해계시지 않은 경우 역시 7.5%로

나타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구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비중이 1/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조차 이들이 우선적으로 원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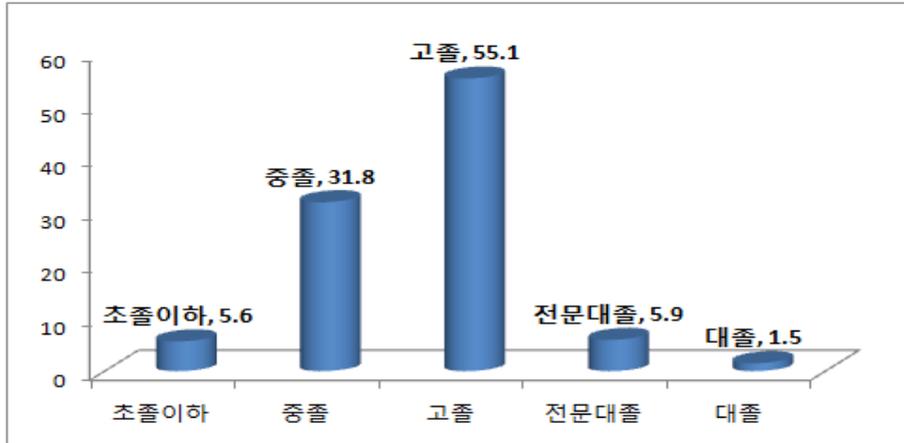


<그림 8>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 또는 모와의 접촉빈도(N=335,356)

3.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수준 및 학업중단 경험

먼저 청소년 한부모들의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절반 가량(55.1%)이 고졸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자는 전체 7.4%에 불과했다. 이는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중 20세 이상이 69.3%(271명)를 차지하고, 이중 전문대 졸업이 가능한 연령인 만 21세 이상은 53.2%(208명)에 달하지만, 그들 중 전문대졸 이상의 최종학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7명)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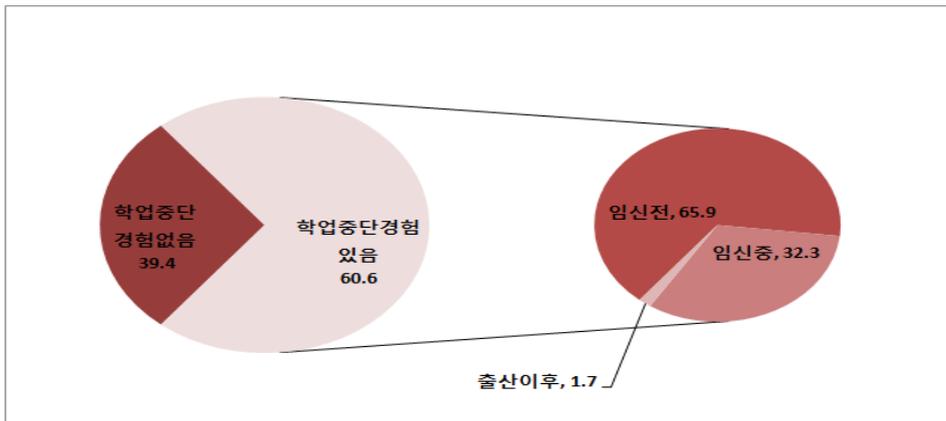
(단위: %)



<그림 9> 청소년 한부모의 최종학력(N=390)

또한, 현재의 학력수준을 취득한 경로로는 정규학교가 81.1%로 가장 많았고, 독학으로 검정고시가 8.2%로 뒤를 이었으며, 대안학교 재학과 검정고시(2.8%), 원격교육기관(1.5%), 대안학교(1.0%) 등을 통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다만 연령이 어릴수록 검정고시나 원격교육기관, 대안학교 등 정규학교 이외의 경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중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0.6%로, 학업중단 시기는 임신 전이 65.9%, 임신 중이 32.3%, 출산 이후가 1.7%였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청소년 한부모가 이미 임신 전에 학업을 중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10> 학업중단 경험(N=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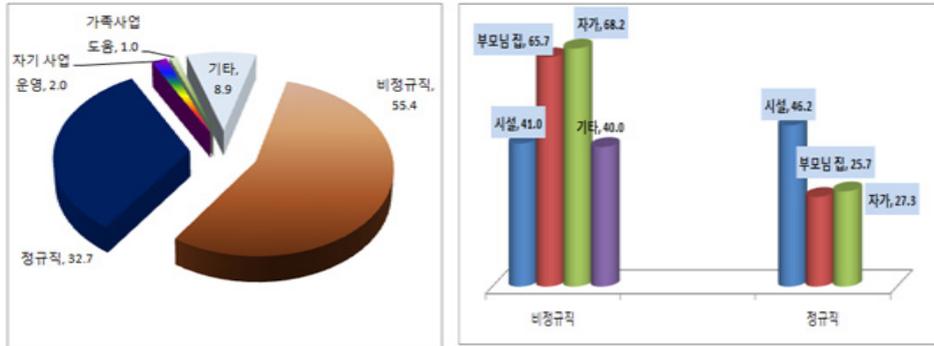
특히 학업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한부모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학업을 중단한 경우(21.5%, 84명)로 제한하여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임신이 알려질까봐 스스로’가 35.7%로 가장 많았고, ‘학교의 징계나 강요’(16.7%), 부모의 권유(15.5%), ‘출산후 몸조리를 위해’(8.3%)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자녀연령, 거주유형 등의 주요 변수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는 데 있어 여전히 미혼부모, 특히 청소년기의 미혼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향후 학업관련 의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94.5%) 학업을 지속할 의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27.0%) 학력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4. 청소년한부모의 직업경험과 소득수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경험 및 현재의 고용상태는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5.8%로,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와 자녀 연령이 어린 집단, 자녀와만 동거하고 있는 경우, 비수급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양육과 취업활동의 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립 기반 약화 및 경제적 어려움 또한 상당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 일주일간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형태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5.4%)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32.7%였고, 자기사업을 운영하거나(2.0%) 가족 사업을 돕는 경우(1.0%)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이나 연령, 자녀연령 등과 같은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거주유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모님 집(65.7%)에 거주하는 경우와 자가 거주자(68.2%)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설 거주자에게서 46.2%로 가장 높았다.

(단위: %)



<그림 11> 청소년한부모의 고용형태와 거주유형별 분포(N=101)

청소년 한부모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약 82만원 정도로,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 조사에서 20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가 19세 이하 한부모에 비해 약 18만원 정도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월평균 임금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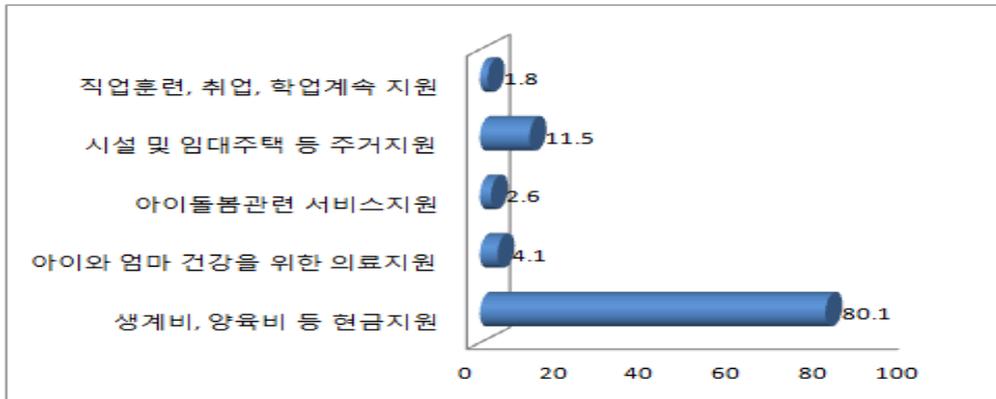
	전체	평균	표준편차	T / F
합계	100	82.08	34.75	
본인 연령				
19세 이하	19	67.89	35.68	-2.007*
20세 이상	81	85.41	33.90	

주: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 한부모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저임금 문제가 3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육시간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은 경우가 26.5%, ‘일-가정 병행에 따른 피로’가 19.4%였으며, 이 밖에 ‘불투명한 직장전망’(5.1%), ‘아이 양육자 구인 어려움’(5.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4.1%), ‘장시간 근로’(2.0%)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방법(1순위) 역시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 80.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11.5%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 지원 방안 2순위에서는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15.3%), ‘아이와 엄마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13.6%)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청소년한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정책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12> 희망 지원 방안(1순위) (N=391)

제 5 장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문제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성경험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불법 인공임신 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함께 법의 실효성 강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곧 제도적 혼인관계 틀 외에서 임신한 여성들의 자유로운 인공임신중절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곧 출산 미혼모의 수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접근권이 더욱 제한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가족 및 성의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청소년기 유배우 가구의 이혼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점차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자립 및 지지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이들 자녀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향후 자녀세대의 빈곤계층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배정 및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9, 2010년에는 연이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부모가 24세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는 신규사업비로 국비 121억원을 책정한 바, 주요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 규정	개정 규정
보호대상자 범위 (법제5조)	○ 한부모가구의 첫째아이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을 벗어날 경우 모든 가구원을 한부모가구에서 탈락 조치	○ 18세 이상 자녀만 한부모가족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신 설〉	○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실시, 결과 공표
복지급여의 내용 (법 제12조)	○ 임의규정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교육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 강행규정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 임의규정 -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추가아동 양육비 (법 제12조)	○ 임의규정 - 미혼모·부 추가아동양육비(5세미만)	○ 강행규정 - 미혼모(부)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구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법 제17조)	〈신 설〉	○ 국가나 지자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학업 지원을 할 수 있음. * 교육비,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조정 (법 제19조)	〈신 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 입양기관 운영하는 자는 미혼모자시설 설치운영 금지('15. 7. 1. 시행)

※ 시행일 : '12. 1. 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재분류는 '12. 7. 1.,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시설 폐지 '15. 7. 1. 시행

이들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로서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의료비 월 24천원, 빈곤대물림 단절을 위한 가구별 발달자산형성(IDA) 지원사업이 병행(월 5~20만원 한도, 1:1매칭지원)될 뿐만 아니라 한부모들의 학업지속의사가 확인되면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의 역량강화(연 154만원 범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 및 최근 변동사항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청소년한부모지원 사업의 주요내용

구 분	양육비	검정고시 학 습 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의료비	자산형성 지 원
지원액	월15만원	연 154만원	월10만원	월24천원	월5~20만원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자(수급자)로 취업, 학원 등 자립활동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5만원이하 :수급권자 -20만원이하 :최저생계비 100~150%
지원 연도	10~' 11년	'10~ '11년	'11년	'11년 제외	'10년 신청자에 한해 지원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한해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은 집행실적의 부진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은 향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한부모 지원정책의 성패는 정확한 정책대상자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정책설계에 사용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를 구성하는 미혼한부모의 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기존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자료(2005)인 바, 이는 미혼한부모 가구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이다. 이는 센서스 조사당시 혼인지위가 미혼인 경우 자녀출산유무를 묻지 않는 설문문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한다면의 교차분석을 통해 재생산된 한부모 가구통계 가운데 미혼한부모의 수치는 대단히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책 설계시 기본근거자료로 활용된 미혼한부모 수는 결과적으로 과다 추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혼한부모 가구와 무관한 가구형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정의에 합당한 가구들을 혼인지위별로 각각 추산하여 실제 한부모 가구 수에 가까운 근사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다각화하고 지원내용의 폭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지원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에는 여전히 상당한 용기와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따라서 원가족의 반대는 물론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위험요인보다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월등하게 높거나 적어도 대등할 만큼의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인지될 경우에만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족의 시선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롭거나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원욕구를 가지고 있는 재가 청소년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최근 빠르게 변화해온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김혜영 외, 2010). 특히 이러한 지원정책은 성인미혼모보다는 청소년한부모 집단의 인지율이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재가미혼모 집단에서 그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에 관한 한 재가한부모들의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변화해온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면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매우 시급하다.

<표 8> 한부모관련 지원정책 인지도

(단위: 명, %)

미혼한부모 거점기관 인지도	예	아니오	응답자 수	χ^2 (df)
전 체	340(46.8)	387(53.2)	727(100.0)	
미혼한부모 연령범주				
24세 이하	123(42.9)	164(57.1)	287(100.0)	2.913(1)
25세 이상	217(49.3)	223(50.7)	440(100.0)	
거주 특성				
재가	217(48.3)	232(51.7)	449(100.0)	1.151(1)
시설	123(44.2)	155(55.8)	278(100.0)	
저소득한부모 지원사업인지도	예	아니오	응답자 수	χ^2 (df)
전 체	387(53.2)	340(46.8)	727(100.0)	
미혼한부모 연령범주				
24세 이하	128(44.6)	159(55.4)	287(100.0)	14.197(1)***
25세 이상	259(58.9)	181(41.1)	440(100.0)	
거주 특성				
재가	263(58.6)	186(41.4)	449(100.0)	13.460(1)***
시설	124(44.6)	154(55.4)	278(100.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예	아니오	응답자 수	χ^2 (df)
전 체	295(40.6)	432(59.4)	727(100.0)	
연령대2				
24세 이하	146(50.9)	141(49.1)	287(100.0)	20.837(1)***
25세 이상	149(33.9)	291(66.1)	440(100.0)	
거주 특성				
재가	152(33.9)	297(66.1)	449(100.0)	22.021(1)***
시설	143(51.4)	135(48.6)	278(100.0)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김혜영 외, 2010.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본 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언하고 있다. 즉 성,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차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 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2011년 현재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는 월 15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것에 의존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보는 한부모는 거의 없을 만큼 대단히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일반 저소득한부모들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되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00% 초과자에 대해 월 10만원, 기존 한부모 양육비(5만원) 지원대상자(100~130%)에게는 5만원 추가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은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들에 대한 양육비 확대를 논의하되, 적어도 자녀성장에 소요되는 최소 항목, 즉 식료품, 의복신발, 보건의료 및 교육비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교육비의 경우 관련 보육시설이용 및 공교육 관련 지원이 별도로 시행되는바, 식료품비와 의복신발과 같은 기초 재생산비용에 해당하는 최소 양육비 20만원은 2012년부터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교육이나 보육시설 이용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관련 교재는 물론 교육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필수 이벤트참여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30만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만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단위: 만원)

	주거 및 광열 수도	가구집기 가사용품	교양 오락	교통 통산	기타 소비지출	식료품	의복 신발	보건 의료	교육	사교육	전체
비용	5.5	1.3	2.6	11.2	20.4	15.6	4.4	1.6	15.3	23.0	100.9

자료: 김승권 외(2009)에서 재구성

2) 주거/ 주거비 지원 확대

그동안 한부모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퇴소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주거비용 충당에서 오는 경제적 불안정의 증가로 자립기반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한부모의 주거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월세 33.8%, 기타 47.6%로 불안정한 주거유형이 높게 나타났고, 자가나 전세의 경우 조차 각각 7.7%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10).

이런 점에서 한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본 고에서는 전세자금 대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컨대 현재 한부모창업을 위한 자금대여는 가능하나 주택임대보증금 등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금관리 위험 차원에서도 창업보다는 전세금 저리 대출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같은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내용변경을 통한 여성가족부의 직접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면 미소금융 등과 같은 소규모공공자금 대출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화 지원사업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1순위가 주어지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의 선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우선권 확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취업 혹은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이돌보미 우선 지원

청소년 한부모들은 일반 한부모에 비해 연령이 젊다는 점에서 조기 정책개입을 통한 자립효과가 큰 정책대상자로 분류 가능하다. 특히 이들의 연령효과로 인해 이들 자녀들은 영유아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육 미혼모들은 대부분 한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들 자녀의 연령은 평균 3.29세로, 만 2세 이하가 전체 50.3%, 만 3~5세(32.5%), 만 6~11세(15.3%), 만 12세 이상(1.9%) 의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자녀양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9, 2010).

그러나 현재 영유아 보육은 최근 급격한 시설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접근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양육미혼모들의 경우 취업훈련 과정에서 보육시설이나 돌보미 지원 수혜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이용률(7.5%)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 미혼모(11.3%)와 재가미혼모(0%)와 같이 양육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집단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김혜영 외, 2010). 따라서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의 개선과 실질적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취업자와 직업훈련 참가자에게 우선적인 자녀돌봄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서포터즈단 발대 및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망 구축

특히 양육미혼모가 아무런 외부적 지지망이 없어 도움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사회적 고립”자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앞의 표에서 제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2010년 조사결과에서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생존해 계신 부모님과 연락두절이나 일체의 교류가 중단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아래의 표 참조).

<표 10> 부친 혹은 모친과의 완전단절

(단위: 명, %)

	부친	모친
전체	518(100.0)	603(100.0)
완전단절	116(22.4)	77(12.8)

<표 11> 상황별 도움 요청 1순위 대상자 분포

(단위: 명, %)

	집안일 일손 필요	급전 필요시	자녀의 위급상황	이야기상대	어려움 토로 및 조언
전체	727(100.0)	727(100.0)	727(100.0)	727(100.0)	727(100.0)
부모	221(30.4)	288(39.6)	312(42.9)	61(8.4)	109(15.0)
형제자매	84(11.6)	115(15.8)	78(10.7)	70(9.6)	66(9.1)
친구	72(9.9)	90(12.4)	66(9.1)	365(50.2)	250(34.4)
이웃	45(6.2)	12(1.7)	30(4.1)	37(5.1)	30(4.1)
선생님	23(3.2)	13(1.8)	36(5.0)	25(3.4)	89(12.2)
자녀의 아버지	16(2.2)	25(3.4)	30(4.1)	12(1.7)	4(0.6)
친척	9(1.2)	8(1.1)	12(1.7)	4(0.6)	12(1.7)
조부모	3(0.4)	2(0.3)	3(0.4)	0(0.0)	1(0.1)
직장 동료	3(0.4)	7(1.0)	3(0.4)	13(1.8)	20(2.8)
아무도 없다	251(34.5)	167(23.0)	128(17.6)	140(19.3)	146(20.1)

출처: 김혜영 외 (2010)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전국 17개소에서 운영중인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정서적 지지망이자 자문자(자문가족)의 기능을 수행할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이들간의 가까운 이웃사촌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같은 사업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용이성과 확산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서포즈단에 참여한 개인이나 가족에게는 행안부등과 연계하여 봉사마일리지 부여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소년한부모의 취창업 지원 및 고용알선 활성화 지원사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육미혼모의 45%만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응답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64.8%가 일자리를 원하고, 그 중 73.4%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혜영 외, 2010). 물론 현재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영유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상담은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직업상담사나 전문 직업플래닝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프로그램과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의 연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새일센터를 권역별로 하여 청소년 한부모특성에 맞는 직종개발 및 관련 직훈프로그램 개발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노동고용부와의 연계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질 것이다.

6) 청소년한부모를 차별해소를 위한 반편견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한부모 역시 양육미혼모들과 유사한 차별적 시선에 노출되어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가족형태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차별을 명시적인 것으로 가시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가족상황에 대한 미디어의 편견조장 사례 모니터링 연구나 관련 유사연구 용역사업을 통해 그 결과를 해마다 미디어를 통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성공사례 수기 공모를 실시함은 물론, 양육미혼모들의 자주 이용하는 관공서나 공공지원서비스 기관으로부터의 차별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의 반편견교육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홍보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7) 재가 청소년 한부모의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재가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시설을 통한 직접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이 시설퇴소후, 혹은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이웃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재가 미혼모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는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전담 상담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같이 배치된 전담인력을 통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재가 청소년 한부모들을 적극 발굴함과 아울러 이들의 생활상황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혼한부모의 특성상 전인격적인 관계나 대면관계를 기피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온라인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미혼모의 발생 예방, 임신 및 출산 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상담 및 연계지원은 물론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요구를 항시 청취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상담 창구 개설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위드맘이 미혼모 위기 온라인 상담창구로 개설되어 있으나 상담기능이 크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뿐이 아니라 현재 전국 17개소에서 운영 중인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점진적 확대를 통해 한부모들의 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거점기관의 경우, 연간 상담건수가 5,665건으로, 이는 개소한 시점과 한부모, 특히 접근성이 매우 낮은 미혼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실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거점기관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거점기관은 온라인 상담서비스와 함께 한부모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Bianchi, S. M. (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 pp.401-414.
- Gershuny, J. I.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 『2008년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
- 김미곤(2010) "2010년 기초보장제도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59(2010.1): 2-127
- 김은지, 장혜경, 이미정, 최인희, 김혜영(2011),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여성가족부
- 김혜영(2010), "십대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 김혜영(2008)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안상수. 2009.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안상수, 이미정, 선보영(2009) 「미혼부모와 그들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김혜영, 이미정, 이택면, 김은지, 선보영, 장연진(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혜영·김은지·최인희·김영란(2011), 「조손가족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0) 「아이돌보미사업안내 2010」.
-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이미정(2009) "국내외 입양과 미혼모복지",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2008)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김혜영·김승연·류연규(2009)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김혜영·선보영(2010)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MEMO

MEMO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

인 쇄 2012년 3월 19일

발 행 2012년 3월 1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